

법관 징계청구 요청에 대한 의견서

해 당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

해 당 법 관 ○ ○ ○

이해관계인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6,7층(당산동, 은혜빌딩)

대표자 조진경

전화 02-6348-1318, 팩스 02-2690-1255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의견서 제출 경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사이버 성착취 피해지원과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은 이 사건 피해자의 언니인 이○은씨를 2022년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만났습니

다.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대표에게 토론회가 끝나고 다가온 이○은씨는 ‘재판 중에 판사님이 합의를 강요한 적이 있는가?’ 를 물어보았습니다. 조대표는 ‘지금까지 진행한 사례들 중, 재판 중에 판사님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요청하니 다음 재판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합의 강요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판사님이 무엇 때문에 합의를 강요하겠는가? 그런 상황은 없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던 중 이○은씨가 “사실은 제 동생이 피해자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재판 중에 담당 판사님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고인 측이 합의금을 준비한 것 같으니 많은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자가 원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냐?’ 고 했고, 이에 피해자 가족들이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보다 금액이 작다. 지금 합의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고 했다” 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 ‘피해자 측도 힘들지만 피고인도 나이가 어려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있는 것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합의를 하라’ ” 고 했으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반성보다는 약한 처벌만 받기를 원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가해자 측에 대해 법정에서 얘기하고 싶다는 이○은씨의 요청도 가볍게 넘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사님은 피해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겨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검찰도 소

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 상고로 불복하였으며, 이○은씨는 이 사건 판사님의 법정 발언과 가정법원으로 넘긴 이 사건 결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피해자인 동생을 대신해 법원에 수차 의견서를 내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을 혼자서 해왔다고 했습니다.

조대표는 이에 깜짝 놀라 판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재판 중에 하셨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떤 사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이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처참함에 또한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대표와 처음 만났을 때 이○은씨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우 불안해 보였고,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있었으며, 남의 말을 찬찬히 듣고 이해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한 맺힌 분노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나는 법을 전공하고 있고, 법률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될 것을 믿어왔다. 나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동생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피해자들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정말 죽고싶다.’ 는 말을 지속적으로 조대표에게 하였습니다.

조대표 또한 판사님이 어린 가해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쓰럽게 보셨을 것

이라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피해의 처참함과 재판 중 피해자 가족들의 애
통함을 무찌르면서까지 왜 합의를 하게 하려 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겠
지 싶다가도 이 사건의 참혹함과 오직 피고인의 엄벌만을 탄원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피끓는 절규가 분명히 재판 중에도 판사님께 전달되었을 텐데 왜
판사님께서 단지 피고인의 선처만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치상 등 범
행(대구지방법원 2021○○○○○○)으로 인하여 질이 10cm나 찢어지는 좌측질
열상을 입어 범행 당시 속옷은 물론 옷까지 피로 뒤덮인 상황이었습니다. 많
은 출혈로 혈압이 떨어져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 위급상태였
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는 혼자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였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가 심해져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해야 했고 현재까지도 고통스러
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장애인 딸을
키우느라 하루도 맘 편히 살 수 없었던 피해자 부모들은 이 사건을 통해 동
생 뭇만큼 더 잘 살아 부모님들의 삶을 위로하고 싶어 더욱 열심히 살아왔던
첫째 딸의 정신병원 치료와 자살시도 상황에까지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본 센
터 법률지원단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과 심리치료지원 등 필요한 조
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피해 사건의 판사로서 가해자의 범죄에 상응

하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위로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 부장판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 부장판사는 가해자에 치우친 관대함으로,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 무지와 편견에 가득 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다시는 성피해 법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드리고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 부장판사님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그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 부장판사는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피고인을 옹호하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중용하였는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유일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법부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사법부마저 피해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니 온 가족이 분노와 허탈감으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피해자는 2021년 사건 당시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자그마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벽에 머리를 찧고 차도에 뛰어드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고 왜 피해자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하는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성찰 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었더라면, 하다못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면밀하게 법적으로 판단할 의지만 보여주었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고통이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김수정, 김종민 위원)는 법관이 재판 도중에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에 관한 발언이라든가 소송지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발언 등을 넘어서 재판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 재판 당사자 등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발언 등은 재판 당사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재판’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사건 판사가 피해자 측이 자신의 발언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 부장판사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법관의 법정언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대법원에 요청합니다.

○○○ 부장판사의 2차 가해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장판사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으로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법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 부장판사에게 최대한의 징계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 05. .

이해관계인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자 조진경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귀중